

의안번호	2204867
의 퇴 인	황운하 의원
회 답 일	2024. 11. 27.
추 계 번호	24B449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운송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운송사업자별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등을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억 4,100만원(연평균 8,8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항공정책기본계획 포함 사항 추가(안 제3조)	-	-	-	-	24	24	5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포함 사항 추가(안 제64조)	80	82	83	85	87	417	83
합계	80	82	83	85	111	441	88

주: 1. 현행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별 연구용역 수행 단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약 90개 항공사의 재무제표와 마일리지 자료 획득 및 연락을 전담하는 인력(1인) 사용, 항공사 재무제표와 마일리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문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분석 등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 제10호 신설	항공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u>10. 항공운송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u>	의무규정
2	안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2항제6호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6.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 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 다)별 적립·사용 기준 및 현황 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운송사업자별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가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제10호 신설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2항제6호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중인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운송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운송사업자별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조사 및 연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항공정책기본계획(최근 제4차, 2025~2029) 수립 주기에 맞추어 항공정책기본계획 포함 사항 추가를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중 2029년에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포함 사항 추가를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중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운송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제2항제10호 신설)
 -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제3조에 따라 항공정책·안전·공항개발 등 항공분야 최상위 기본계획인 ‘항공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중이며, 최신 계획인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25~’29) 수립 용역에 수반되는 예산은 2억 2,000만원임
 - 제1차(’10~’14) / 제2차(’15~’19) / 제3차(’20~’24)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4. 1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2.5	5.1	3.6	2.5	2.1	2.0	2.0	2.0	2.0

(단위: %)

- 항공정책기본계획은 국내외 항공정책 환경의 변화 전망, 국내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등 10개의 기본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중인데, 10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2억 2,000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별 연구용역 수행 단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개정안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총 2,400만원(연평균 5백만원)으로 추계
 - 기본계획 수립 사항 추가 예산 2,2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표 2] 현행 항공정책기본계획 포함 사항

1. 국내외 항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국내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공항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 항공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안전기술·항공기정비기술 등 항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항공교통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9.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항공사업법」 제3조제2항

[표 3] 항공정책기본계획 포함 사항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항공정책기본계획 포함 사항 추가	-	-	-	-	24	24	5

주: 현행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별 연구용역 수행 단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내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운송사업자별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등 추가(안 제64조제2항제6호)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항공교통사업자·이용자 현황, 피해현황, 서비스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연 단위로 발간하여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 중에 있으며, 최근 3년 해당 보고서 발간을 위한 예산은 연 1억원임
 - 현행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는 정부, 공항공사, 한국소비자원이 보유한 정보 및 국내외 항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등 산재적으로 나뉘어 있는 항공서비스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구성·제작
- 개정안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별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추가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약 90개 항공사의 재무제표와 마일리지 자료 획득 및 연락을 전담하는 인력(1인)의 인건비와 항공사 재무제표와 마일리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문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분석 용역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표 4] 항공운송사업자별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등 파악을 위한 추가비용 내역

- 인건비: $1인 \times 12월 \times 1,388,875원^{2)}(참여율 25\%) = 20,833,125원$
- 위탁용역비: 50,000,000원
 - 유사한 용역으로 「20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항공사 서비스 안정적 공급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을 회계법인에서 수행[국적항공사(11개사) 재무현황과 면허변경에 따른 재무능력 평가·분석 및 지원 업무]했는데, 용역 비용은 ‘23년 기준 약 2,500만원
 - 과업의 대상(약 90개 항공사)이 약 8배 이상 증가하나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비용을 약 2배로 추정
- 일반관리비: 총경비(인건비+위탁용역비)의 약 3%
 - $(20,833,125원 + 50,000,000원) \times 3\% = 1,894,148원$
- 부가가치세: 총경비(인건비+위탁용역비+일반관리비)의 약 10%
 - $(20,833,125원 + 50,000,000원 + 1,894,148원) \times 10\% = 7,272,727원$
- 합계 8,000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2)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학술용역단가 적용

-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약 90개 항공사의 재무제표와 마일리지 자료 획득 및 연락을 전담하는 인력(1인)을 사용하고, 항공사 재무제표와 마일리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문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분석 등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억 1,700만원(연평균 8,300만원)으로 추계
 - 연도별 재정소요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표 5]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포함 사항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포함 사항 추가	80	82	83	85	87	417	83

주: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약 90개 항공사의 재무제표와 마일리지 자료 획득 및 연락을 전담하는 인력(1인)을 사용하고, 항공사 재무제표와 마일리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문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분석 등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현행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별 연구용역 수행 단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약 90개 항공사의 재무제표와 마일리지 자료 획득 및 연락을 전담하는 인력(1인) 사용, 항공사 재무제표와 마일리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문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분석 등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